

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2차) 개최 결과

1 목 적

-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「'23년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」의 세부일정 및 평가항목 적용 기준 수립 등을 확정하기 위함

2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 '23. 5. 2.(화) 13:30 ~ 16:00
- (장 소)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
(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,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813호)

3 참 석 자

- (평가 운영위원) 6명
 - 당연직 위원 : 2명
 -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
 - 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이상근 부장
 - 위촉직 위원 : 4명
 - (내부)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유재홍 부장
 - (외부)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,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센터장,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최홍구 단장
- (평가 담당자) 2명
 - 안전보건평가실 이정미 차장(간사), 박주희 대리

4

위원회 안건 검토 결과

구분	검토내용	결과	검토 결과 요약							
안건1	'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세부추진 계획	<u>원안동의</u>	○ 평가대상 : 보건관리전문기관 126개소 ※ 평가대상 제외 :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기관(11개소) 제외 ○ 대상기간 : 2022.1.1. ~ 2022.12.31.까지 업무 ○ 평가기간 : 2023. 5월 말 ~ 7월 초 ○ 평 가 반 : 8개 반 운영(2인 1개반) - 중·남부권평가센터 직원 -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							
안건2	'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방법 일부 수정	<u>수정동의</u>	○ ①번 [A.2.1.1] 법정인력의 경력 / [A.2.1.2]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→ 수정동의 ※ 주4일 미만 근무하는 신고인력을 인정하게 되면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존 적용요건 유지 필요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적용요건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 (이직자, 퇴직자 포함)</td></tr><tr><td>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 기준으로 평가</td></tr><tr><td>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 할 경우 인정</td></tr><tr><td>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</td></tr><tr><td>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</td></tr><tr><td>6) 업무분장 상에 포함</td></tr></tbody></table> ○ ②~⑥번 → 원안동의	적용요건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 (이직자, 퇴직자 포함)	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 기준으로 평가	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 할 경우 인정	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	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	6) 업무분장 상에 포함
적용요건										
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 (이직자, 퇴직자 포함)										
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 기준으로 평가										
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 할 경우 인정										
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										
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										
6) 업무분장 상에 포함										
안건3	'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일부 개정	<u>원안동의</u>	○ ①~⑥번 → 원안동의							
기타	'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일부 개정	-	○ B.2.①~⑥ 건강관리_6개 평가항목 중 - 「①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, ③ 영양 후 업무복귀 시 업무적합성평가 지도」 평가 시 '직업성질환 또는 적정한 사례' 발굴에 기점 방식 도입을 검토 - 「②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」 평가 시 실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 수 예측 후 적용 필요							

기타	'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일부 개정	-	- 「④ 근골격계질환,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」 평가 시 대상 모수가 작을 경우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대상사업장 구체화 필요 ○ C.1.①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 성과는 산재 승인율 통계에 기반하고 있고, 오히려 산재 은폐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항 목에서 제외 필요 ☞ 위 추가 의견에 대하여, 평가반 워크숍 및 파트 리더-본부 담당자 간 토의과정을 통해 추후 안건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